

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61
----------	-----

2023년 9월 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7월 19일 이소라 의원의 19명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3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소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주거 형태, 소득 수준, 경제 활동 참가율을 추가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
다. 입법예고(2023.8.24.~8.28.) 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1인가구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거형태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하여 명시하려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실태조사 (안 제10조제2항)

- 개정안은 시장이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1인가구의 실태조사에 주거형태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생략)	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, <u>성별</u> , 지역 및 <u>생활수준</u>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성별</u> , <u>주거형태</u> ----- -- <u>생활수준</u> , <u>소득수준</u> , <u>경제활동 참가율</u> 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- 여성가족부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5년 44.2%에서 2020년 31.7%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2015년 21.3%에서 2020년 30.4%로 크게 증가하였음¹⁾.
- 서울특별시 내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9.5%에서 2022년 38.2%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·도 광역시 중 서울은 대전(38.5%) 다음으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(38.2%)이 높음²⁾.
- 1인가구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형성되며 연령별, 지역별, 성별,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해 보임.
- 동 개정안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³⁾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령, 성별, 지역 및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주거형태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1인가구의 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조례 시행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,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·탄력적으로 대응하기

1)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발표, 2021-05-28

2) 통계청,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

3) 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」제8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하는 방안
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-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
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
<p>○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추진해야하는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정책수요 파악과 계획수립에 활용을 보다 실질적이 되도록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.</p> <p>※ 최근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(‘22년도)에서 이미 1인가구의 주거 형태 및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</p>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거형태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임.
- 성별, 연령별,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가구 정책을 수립·추진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임.
- 다만 조례에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,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바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하는 방안
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96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7월 19일

발 의 자: 이소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태, 남창진,
박승진, 박영한, 신복자,
왕정순, 윤종복, 이민옥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임종국, 전병주, 최민규,
한·신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주거 형태, 소득 수준, 경제 활동 참가율을 추가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강가정기본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성별”을 “성별, 주거형태”로, “생활수준”을 “생활수준, 소득
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, <u>성별</u>, 지역 및 <u>생활수준</u>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성별, 주거형태</u>----- ----- <u>생활수준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</u> ----- -- 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